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등 제·개정에 따른 검찰사무 세부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하여 해당 법률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 제5항 수사 결과 등의 통지 대상 법률에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를 추가하여,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임직원 등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수사 사실 등의 통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체포, 구속, 압수·수색·검증 등을 위한 각종 영장청구서의 서식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유효기간 중기’ 기재 부분을 삭제하여 등 검찰의 영장청구서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유효기간 기재가 서로 달라 발생하는 실무상 혼선을 해소하며,

검사 수사개시 범위 이외 범죄의 경우 경찰에 이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수사중지기록 관련 구제신청 처리 절차에 대한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7. 6.~8.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잠정조치

제2편 제2장 제7절의 제목 “그 밖의 강제수사”를 “그 밖의 강제수사 등”으로 한다.

제2편 제2장 제7절에 제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2(잠정조치 또는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 청구 등) ① 검사가 직권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하거나 그 기간의 연장, 종류의 변경,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스톱킹처벌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경우 : 별지 제157호의2서식의 잠정조치 청구서
2. 스톱킹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기간연장 또는 종류의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 별지 제157호의3서식의 잠정조치 변경 청구서
3. 스톱킹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

우 : 별지 제157호의4서식의 잠정조치 취소 청구서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 또는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스톱킹처벌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경우 : 별지 제157호의5서식의 잠정조치 청구서
2. 스톱킹처벌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는 경우 : 별지 제157호의6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청구서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 또는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신청을 검토하여 잠정조치 또는 긴급응급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잠정조치 또는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1. 사법경찰관이 잠정조치를 신청한 경우 : 별지 제157호의7서식의 잠정조치 신청 기각서
2.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신청한 경우 : 별지 제157호의8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신청 기각서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잠정조치 또는 그 기간의 연장, 종류의 변경, 취소를 청구하거나 잠정조치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잠정조치청구부에 해당사항을 기록하고, 긴급

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거나 사후승인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부에 해당사항을 기록한다.

⑤ 잠정조치 또는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 청구의 기각, 집행 등에 관하여는 잠정조치 또는 긴급응급조치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5조제6항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⑥ 검사의 잠정조치의 결정 집행에 관하여는 제97조제4항을 준용하고, 잠정조치 또는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결정의 항고에 관하여는 제97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03조제5항 중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을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로 한다.

제1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하여”를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로 한다.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수사중지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138조제2항에 따르고, 수사중지기록을 반환하면서 시정조치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에 따른다.

제230조제2항 중 “제228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를 “제2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사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3호의2 서식의 조사사건 송치서에 따르고, 다른 기관으로 이송·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4

호의2 서식의 조사사건 이송·이첩서에 따른다.

제12편의 제목 “보칙”을 “다른 기관의 의뢰에 의한 영장청구 관련 절차”로 한다.

제12편제1장(제301조 및 제302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301조(용어의 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장청구 의뢰사건’이라 함은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의2,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0조 등 형사소송법 이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게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의뢰한 사건을 말한다.
2. ‘영장’이라 함은 제1호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게 청구를 의뢰하는 압수·수색영장을 말한다.

제302조(적용범위) 이 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영장청구 의뢰사건에 적용한다.

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영장청구 의뢰
2.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영장청구 의뢰
3. 기타 형사소송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다른 국가기관의 영장(압수·수색영장, 법원 허가서 또는 명령서 등 명칭을 불문하고 제1호·제2

호와 유사한 목적인 경우를 말한다)청구 의뢰

제12편 제2장(제303조부터 제30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사건의 수리

제303조(수리절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02조 각 호에 따른 영장청구 의뢰가 접수될 경우 의뢰서 상단에 별지 제377호 서식의 사건접수인을 찍어 사건을 수리한다.

제304조(사건수리의 기재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378호 서식의 영장청구 의뢰사건 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건번호는 수리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년도와 접수번호를 “○○○○년 의뢰 제○호”로 표시한다.

③ 영장청구 의뢰사건의 수리 전 점검과 조치, 수리에 관한 지휘·감독, 인계인수에 관하여는 제9조 제1항·제2항, 제11조, 제12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등”은 “의뢰기관”으로, “영장신청서등”은 “영장청구의뢰서”로 본다.

제305조(사건기록의 처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절차가 종료된 사건기록을 처리할 때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명을 받아야 한다.

제12편 제3장(제306조부터 제31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사건의 처리

제306조(결정) 검사가 영장청구 의뢰사건을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청구

2. 불청구

제307조(소명자료 보완요구) 검사는 영장 청구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뢰기관에 소명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8조(청구 결정)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379호 서식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자료제출요구용)를 작성하고 영장청구 의뢰사건 기록 표지에 편철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9조(불청구 결정) 검사가 불청구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0호 서식의 영장청구 의뢰사건기록 및 불청구 결정서를 작성하고 영장청구 의뢰사건기록 표지에 편철한다.

제310조(처분결과 등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의 영장청구 의뢰사건에 관한 결정 및 영장 청구, 발부, 집행에 관한 소정의 사항을 영장청구 의뢰사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편 제4장(제311조 및 제312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영장의 집행

제311조(영장 집행) ① 판사로부터 발부된 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검찰수사관이 집행한다.

② 압수조서 작성, 압수목록 교부, 압수물 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50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영장의 집행촉탁·반환에 관하여는 제58조 내지 제59조를, 압수·수색증명서의 교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금융

정보 등의 압수·수색에 관하여는 제91조 내지 제9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유류한 물건 또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자료 또는 물건”으로, “체포영장”은 “영장”으로, “사법경찰관등”은 “검찰수사관”으로 본다.

③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유의사항에 관하여는 「인권보호수사규칙」 제30조 내지 제32조를 준용한다.

제312조(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규정 준용)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8조 내지 제125조, 제127조 내지 제131조의 규정은 이 편에 의한 압수·수색에 준용한다.

제12편 제5장(제313조부터 제31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결과 통보 등

제313조(결과 통보) ① 검사가 영장청구 의뢰사건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시점에 지체 없이 의뢰기관에 통보한다.

1. 영장을 청구·발부 받아 집행한 경우 : 영장의 집행을 완료한 때
2.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판사가 기각한 경우 :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때
3.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 불청구 결정을 한 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381호 서식에 따른다.

제314조(열람·등사 신청) ① 제313조 제1항 제1호의 통보를 받은 의뢰기관은 별지 제382호 서식에 따라 압수물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압수·수색한 자료 또는 물건의 목록을 제외한 자료등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383호 서식의 열람·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의뢰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15조(압수물 환부) ① 검사는 제314조에 따른 열람·등사 절차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압수물을 환부해야 한다.

② 검사는 의뢰기관이 제3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등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압수물을 환부할 수 있다.

제12편 제6장(제316조 및 제317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기록관리

제316조(영장을 청구한 사건의 기록관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384호 서식의 영장청구 의뢰사건기록을 표지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편철한 후 별도 기록으로 관리한다.

1. 영장을 청구·발부 받아 집행한 경우 : 의뢰기관이 제출한 영장청구 의뢰서, 영장,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등 집행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처리결과 통보서 등
2.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판사가 기각한 경우 : 의뢰기관이 제출한 영장청구 의뢰서, 기각된 영장청구서, 처리결과 통보서 등

제317조(불청구 사건의 기록관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08조에 따라

조제된 기록 말미에 처리결과 통보서 등을 편철한 후 별도 기록으로 관리한다.

제12편 제7장(제31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기타사항

제318조(준용규정) ① 압수물의 수리·영치·처분 등에 관하여 이 편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성격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을 준용한다.

② 기록의 보존 등에 관하여 이 편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성격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검찰보존사무규칙」 중 진정사건 기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9조 앞에 “제13편 보칙”을 삽입한다.

제301조 및 제302조를 각각 제319조 및 제320조로 한다.

제320조(종전의 제302조) 제1항에 제49호의2 및 제4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9의2. 제97조의2제4항의 잠정조치청구부

49의3. 제97조의2제4항의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부

별지 제66호서식 중 “위하여 년 월 일까지 유효한”을 “위하여”로 한다.

별지 제67호서식 중 “인정되므로 0000. 00. 00. 까지 유효한”을 “인정되므로”로 한다.

별지 제95호서식 중 “위하여 0000. 00. 00. 까지 유효한”을 “위하여”로

한다.

별지 제96호서식 중 “위하여 0000. 00. 00. 까지 유효한”을 “위하여”로 한다.

별지 제97호서식 중 “위하여 0000. 00. 00. 까지 유효한”을 “위하여”로 한다.

별지 제98호서식 중 “위하여 0000. 00. 00. 까지 유효한”을 “위하여”로 한다.

별지 제101호서식 중 “위하여 0000. 00. 00.까지 유효한”을 “위하여”로 한다.

별지 제102호서식 중 “위하여 0000. 00. 00. 까지 유효한”을 “위하여”로 한다.

별지 제103호서식 중 “위하여 0000. 00. 00. 까지 유효한”을 “위하여”로 한다.

별지 제104호서식 중 “위하여 0000. 00. 00. 까지 유효한”을 “위하여”로 한다.

별지 제114호서식 중 “위하여 0000. 00. 00. 까지 유효한”을 “위하여”로 한다.

별지 제115호서식 중 “인정되므로 0000. 00. 00. 까지 유효한”을 “인정되므로”로 한다.

별지 제130호서식 중 “위하여 0000. 00. 00. 까지 유효한”을 “위하여”로 한다.

별지 제131호서식 중 “위하여 0000. 00. 00. 까지 유효한”을 “위하여”로 한다.

별지 제132호서식 중 “위하여 0000. 00. 00.까지 유효한”을 “위하여”로 한다.

별지 제133호서식 중 “위하여 0000. 00. 00.까지 유효한”을 “위하여”로 한다.

별지 제134호서식 중 “인정되므로 0000. 00. 00. 까지 유효한”을 “인정되므로”로 한다.

별지 제135호서식 중 “인정되므로 0000. 00. 00. 까지 유효한”을 “인정되므로”로 한다.

별지 제144호서식 중 “있도록 0000. 00. 00. 까지 유효한”을 “있도록”으로 한다.

별지 제145호서식 중 “인정되므로 0000. 00. 00. 까지 유효한”을 “인정되므로”로 한다.

별지 제150호서식 기호(□) 중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를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로 하고, 같은 서식 기호(□) 중 “5. 경찰관서”를 “5.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별지 제151호서식 기호(□) 중 “1. 피해아동 도는”을 “1. 피해아동 또는”으로 한다.

별지 제152호서식 기호(□) 중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를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로 하고, 같은 서식 기호(□) 중 “5. 경찰관

서”를 “5.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별지 제153호서식 기호(□) 중 “1. 피해아동 도는”을 “1. 피해아동 또는”으로 한다.

별지 제154호서식 기호(□) 중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를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로 하고, 같은 서식 기호(□) 중 “5. 경찰관서”를 “5.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별지 제155호서식 기호(□) 중 “1. 피해아동 도는”을 “1. 피해아동 또는”으로 한다.

별지 제156호서식 기호(□) 중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를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로 하고, 같은 서식 기호(□) 중 “5. 경찰관서”를 “5.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별지 제157호서식 기호(□) 중 “1. 피해아동 도는”을 “1. 피해아동 또는”으로 한다.

별지 제157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157호의8서식 까지 및 별지 제16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8호서식 중 “수신자 ○○○경찰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신자 ○○○검찰청”을 “수신자 ○○○경
찰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신자 ○○○검찰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제 목 사건이송·이첩서”를 “제 목 사건이송·
이첩서 검사 ㉠”로 한다.

별지 제263호의2서식, 별지 제264호의2서식, 별지 제265호서식 부터 별

지 제267호서식 까지 및 별지 제377호서식 부터 별지 제384호서식까지
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검찰청

(00-0000-0000)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지원) 판사

발 신 : ○○○검찰청

제 목 :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청구

검 사

㉠

다음 행위자의 스토킹행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사후승인 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을 청구합니다.

□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행위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번호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성명	주거
	직장	
긴급응급조치를 한 자의 직급 및 성명		
긴급응급조치를 한 일시와 집행장소		
긴급응급조치의 기간		
스토킹행위 신고의 요지 및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별지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판사 ㉠	

210mm×297mm[백상지(80g/㎡)]

○○○검찰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신청 기각

다음 행위자의 스토킹행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사후승인 신청이 있는 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신청을 기각합니다.

- ☐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행위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호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성명	주거		
	직장			
긴급응급조치를 한 자의 직급 및 성명				
긴급응급조치를 한 일시와 집행장소				
긴급응급조치의 기간				
스토킹행위 신고의 요지 및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별지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검찰청				
검 사 ㉠				

210mm×297mm[백상지(80g/㎡)]

○○○검찰청

(00-0000-0000)

잠 호 0000. 00. 00.
형 호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잠정조치 청구(직권)

검 사 ㉠

행위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호인				
위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잠정조치를 청구합니다. ☐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피해자	성명	주거		
	직장			
범죄사실 및 잠정조치가 필요한 사유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판사		㉠

210mm×297mm[백상지(80g/㎡)]

○○○검찰청
(00-0000-0000)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잠정조치 청구(사법경찰관 신청) 검 사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잠정조치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아래와 같이 잠정조치를 청구합니다.

- ☐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행위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호인			
피해자	성명	주거	
	직장		
범죄사실 및 잠정조치가 필요한 사유	별지 ‘잠정조치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210mm×297mm[백상지(80g/㎡)]

○○○검찰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잠정조치신청 기각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잠정조치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잠정조치신청을 기각합니다.

- ☐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행위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호인			
피해자	성명	주거	
	직장		
범죄사실 및 잠정조치가 필요한 사유	별지 잠정조치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검찰청			
검 사			
인			

210mm×297mm[백상지(80g/㎡)]

○○○검찰청

(00-0000-0000)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잠정조치 변경 청구 검 사 ㉠

다음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잠정조치의
변경을 청구합니다.

피 의 자 · 피 고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사 건 번 호			
잠 정 조 치 결정서 번호			
잠정조치 종류	☐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2. 피해자나 그 주거등 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3. 피해자에 대한 「전기 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변 경 할 잠정조치 종류	☐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2. 피해자나 그 주거등 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3. 피해자에 대한 「전기 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잠정조치 기간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연장 또는 변경할 잠정조치 기간	
잠 정 조 치 의 변경이 필요한 사 유			
발부하지 않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검찰청

(00-0000-0000)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잠정조치 취소 청구 검 사 ㉠

다음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합니다.

피 의 자 · 피 고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사 건 번 호		
잠 정 조 치 결 정 서 번 호		
잠 정 조 치 종 류	☐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2.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잠 정 조 치 의 기 간		
취소가 필요한 사유		
기 각 하 는 취 지 및 이 유	판 사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시 구 로 (동)

000 귀하

우편번호

○○○○검찰청

(00-000-0000)

수 신 :

○○○ 귀하

제 목 :

재수사요청 사실 통지

1. 0000. 00. 00. 우리청 (0000불제 호)로 접수한 피의자 에 대한 (죄 명)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송부관 서인 ○○○경찰서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 경찰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청

· · ·

검사

인

210mm×297mm[백상지(80g / m²)]

조사사건 송치

○○○검찰청

(00-0000-0000)

사건 ○○ 조사 ○○○호

수신 발신 ○○○○검찰청

검사 인

제목 조사사건 송치

아래 사건을 송치합니다.

피혐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죄 명		
이 송 사 유		
기 록 권 수		
압 수 물		
비 고		

210mm×297mm[백상지(80g / m²)]

시 구 로 (동)
000 귀하
우편번호

사 건 결 정 결 과 통 지 서(피진정인·피내사자)

1. 에 대한 우리청 년 진정·내사 제 호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 사건번호 : 년 진정·내사 제 호
결정일자 : . . .
결정요지 :

※ 위 사건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00-0000-00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검 찰 청

검 사 ○○○

210mm×297mm[백상지(80g/㎡)]

시 구 로 (동)
000 귀하
우편번호

사 건 결 정 결 과 통 지 서(조사)

1. 에 대한 우리청 년 조제 호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 사건번호 : 년 조제 호
결정일자 : . . .
결정요지 :

※ 위 사건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00-0000-00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검 찰 청

검 사 ○○○

210mm×297mm[백상지(80g/㎡)]

0.9cm	1.7cm	4.7cm	1.7cm	1.7cm	1.7cm	1.7cm
	사건과장	. . .수리	주임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년 의뢰 제 호				

영장청구 의뢰사건 처리부

접수일자	사건 번호	대상자		주임 검사	검사 결정	법원 결정	영장 집행	비고
		이름	생년월일					
‘21.09.08.	1	홍길동	80.00.00	김검사	불청구 (‘21.09.10)			
‘21.09.09.	2	박길동	80.00.00	김검사	청구 (‘21.09.11)	발부 (‘21.09.30)	‘21.10.02	
‘21.09.10.	3	김길동	80.00.00	김검사	청구 (‘21.09.12)	기각 (‘21.09.13)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

제 목 : 영장청구 의뢰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귀 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대상자 (개인 또는 기관, 시설, 단체 등)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대상 자료 또는 물건	
영 장 청 구 의뢰일	
처 리 결 과	()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집행 ()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 기각 () 영장 불청구
	※ 압수물에 대하여는 우리 검찰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 기관이 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달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등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수물을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 우 그 이 유	
○○○ 검찰청 검 사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열람·등사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8시간	
신청기관				
영장청구 의뢰사건	의뢰일시			
	사건번호			
신청사유	[] 위원회 조사에 필요			
신청내용	[] 압수·수색한 자료 또는 물건 목록의 열람·등사 [] 압수·수색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 열람·등사			
위 신청기관의 의뢰에 따라 귀 기관이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검 사 결 정	목 록 허 가	자 료 또는 물건 허 가 거 부		범위제한
	㉠	㉠	㉠	㉠
	210mm × 297mm(백상지 (80g/㎡))			

○○지방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발 신 ○○지방검찰청
검 사 (인)

제 목 열람·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

귀 기관의 의뢰에 따라 압수한 아래 자료 또는 물건에 관한 열람·등사 신청을 다음 이유로 거부·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서류 등의 표목 (별지순번 또는 면수)	열람·등사의 거부 또는 범위제한 이유

210mm×297mm
(신문용지54g/m²(재활용품))

		제 책
		제 권

○○○검찰청

영 장 청 구 의뢰사건기록

사건번호	20 년 의뢰 00001호
검 사	
의뢰기관	
대상자	
영장 발부/기각	☐ 영장발부 ☐ 판사기각
편철서류 ¹⁾	1. 의뢰기관이 제출한 영장청구 의뢰서 1. 압수수색영장 1. 압수수색영장 청구서(판사기각) 1. 압수조서 1. 압수물총목록 1. 처리결과통보서

1) 해당하는 서류에 한하여 기재, 별도의 기록목록을 작성하여도 무방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영장신청서 및 관련 기록의 접수)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영장 등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별로 구분하여 영장 등의 신청서와 관련 기록(이하 “영장신청서등”이라 한다)을 함께 접수한다.	제6조(영장신청서 및 관련 기록의 접수) ----- ----- ----- ----- ----- -----.
1. ~ 4. (생략) <u><신설></u>	1. ~ 4. (현행과 같음) 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잠정조치
5. (생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7절 그 밖의 강제수사 <u><신설></u>	제7절 그 밖의 강제수사 등 제97조의2(잠정조치 또는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 청구등) ① 검사가 직권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하거나 그 기간의 연장, 종류의 변경,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경

우 : 별지 제157호의2서식의 잠정조치 청구서

2. 스토킹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기간연장 또는 종류의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 별지 제157호의3서식의 잠정조치 변경 청구서

3. 스토킹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 별지 제157호의4서식의 잠정조치 취소 청구서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 또는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경우 : 별지 제157호의5서식의 잠정조치 청구서

2. 스토킹처벌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는 경우 : 별지 제157호의6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청구서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 또는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신청을 검토하여 잠정조치 또는 긴급응급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잠정조치 또는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1. 사법경찰관이 잠정조치를 신청한 경우 : 별지 제157호의7 서식의 잠정조치 신청 기각서

2.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신청한 경우 : 별지 제157호의8 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신청 기각서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잠정조치 또는 그 기간의 연장, 종류의 변경, 취소를 청구하거나 잠정조치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잠정조치청구부에 해당사항을 기록하고,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거나

사후승인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부에 해당사항을 기록한다.

⑤ 잠정조치 또는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 청구의 기각, 집행 등에 관하여는 잠정조치 또는 긴급응급조치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5조 제6항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⑥ 검사의 잠정조치의 결정 집행에 관하여는 제97조제4항을 준용하고, 잠정조치 또는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결정의 항고에 관하여는 제97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03조(결정결과 등의 통지) ① ~ ④ (생략)

⑤ 검사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2호

⑤ -----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

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 또는 별지 제163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에 따르고,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4호서식의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165호서식의 공무원 등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통보서에 따른다.	----- ----- ----- ----- ----- ----- ----- ----- -----.
⑥ ~ ⑪ (생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140조(구제신청의 처리) ① (생략)	제140조(구제신청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수사중지기록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르고,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수사중지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138조제2항에 따르고, 수사중지기록을 반환하면서 시정조치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에 따른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구제신청에 따른 시정사건의 수리 및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2편 제11장에 따른다.	④ -----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
제230조(조사사건의 처리 등) ①	제230조(조사사건의 처리 등) ①

(생략)	(현행과 같음)
② 제228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사유로 수리된 조사사건이 수사준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송에 관하여는 제226조제2항제5호를 준용한다.	② 제2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6호까지 -----.
<신설>	③ 조사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3호의2 서식의 조사사건 송치서에 따르고, 다른 기관으로 이송·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4호의2 서식의 조사사건 이송·이첩서에 따른다.
제12편 보칙	제12편 다른 기관의 의뢰에 의한 영장청구 관련 절차
<신설>	제1장 총칙
<신설>	제301조(용어의 정의)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장청구 의뢰사건’이라 함은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의2,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0조 등 형사소송법 이외의 법률에서 정하는

<신 설>

바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에
게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의
뢰한 사건을 말한다.

2. ‘영장’이라 함은 제1호에 따
라 다른 국가기관이 관할 지
방검찰청 검사장 등에게 청구
를 의뢰하는 압수·수색영장
을 말한다.

제302조(적용범위) 이 편의 규정
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영장청구
의뢰사건에 적용한다.

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영장청구 의뢰

2.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
명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영장청구 의뢰

3. 기타 형사소송법 이외의 법
률에 따른 다른 국가기관의
영장(압수·수색영장, 법원 허
가서 또는 명령서 등 명칭을
불문하고 제1호·제2호와 유
사한 목적인 경우를 말한다)
청구 의뢰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장 사건의 수리

제303조(수리절차) 사건사무담당
직원은 제302조 각 호에 따른
영장청구 의뢰가 접수될 경우
의뢰서 상단에 별지 제377호 서
식의 사건접수인을 찍어 사건을
수리한다.

제304조(사건수리의 기재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378호 서식의 영
장청구 의뢰사건 처리부에 소정
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건번호는 수리사건마다 일
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
수년도와 접수번호를 “○○○
○년 의뢰 제○호”로 표시한다.

③ 영장청구 의뢰사건의 수리
전 점검과 조치, 수리에 관한 지
휘·감독, 인계인수에 관하여는
제9조 제1항·제2항, 제11조, 제
12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
우 “사법경찰관등”은 “의뢰기
관”으로, “영장신청서등”은 “영
장청구의뢰서”로 본다.

제305조(사건기록의 처리) 사건사

	<u>무담당직원은 수리절차가 종료된 사건기록을 처리할 때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명을 받아야 한다.</u> <u>제3장 사건의 처리</u> <u>제306조(결정) 검사가 영장청구 의뢰사건을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u> 1. <u>청구</u> 2. <u>불청구</u> <u>제307조(소명자료 보완요구) 검사는 영장 청구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뢰기관에 소명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u> <u>제308조(청구 결정)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379호 서식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자료제출요구용)를 작성하고 영장청구 의뢰사건 기록 표지에 편철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u> <u>제309조(불청구 결정) 검사가 불청구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0호 서식의 영장청구 의</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뢰사건기록 및 불청구 결정서를 작성하고 영장청구 의뢰사건기록 표지에 편철한다.</u> <u>제310조(처분결과 등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의 영장청구 의뢰사건에 관한 결정 및 영장 청구, 발부, 집행에 관한 소정의 사항을 영장청구 의뢰사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u> <u>제4장 영장의 집행</u> <u>제311조(영장 집행) ① 판사로부터 발부된 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검찰수사관이 집행한다.</u> <u>② 압수조서 작성, 압수목록 교부, 압수물 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50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영장의 집행촉탁·반환에 관하여는 제58조 내지 제59조를, 압수·수색증명서의 교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금융정보 등의 압수·수색에 관하여는 제91조 내지 제9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유류한 물건 또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자료 또는 물건”으로, “체포영장”은</u>
--	---	--	---	--

<신 설>

<신 설>

<신 설>

“영장”으로, “사법경찰관등”은 “검찰수사관”으로 본다.

③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에 관하여는 「인권보호수사규칙」 제30조 내지 제32조를 준용한다.

제312조(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규정 준용)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8조 내지 제125조, 제127조 내지 제131조의 규정은 이 편에 의한 압수·수색에 준용한다.

제5장 결과 통보 등

제313조(결과 통보) ① 검사가 영장 청구 의뢰사건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시점에 지체 없이 의뢰기관에 통보한다.

1. 영장을 청구·발부 받아 집행한 경우 : 영장의 집행을 완료한 때
2.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판사가 기각한 경우 :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때
3.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 불청구 결정을 한

<신 설>

<신 설>

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381호 서식에 따른다.

제314조(열람·등사 신청) ① 제13조 제1항 제1호의 통보를 받은 의뢰 기관은 별지 제382호 서식에 따라 압수물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압수·수색한 자료 또는 물건의 목록을 제외한 자료 등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383호 서식의 열람·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의뢰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15조(압수물 환부) ① 검사는 제314조에 따른 열람·등사 절차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압수물을 환부해야 한다.

② 검사는 의뢰기관이 제3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등사를 신청하

<u><신 설></u>	<u>지 않은 경우에는 압수물을 환부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6장 기록관리</u> <u>제316조(영장을 청구한 사건의 기록관리)</u> 사건사무담당직원은 <u>별지 제384호 서식의 영장청구 의뢰사건기록을 표지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편철한 후 별도 기록으로 관리한다.</u> 1. <u>영장을 청구·발부 받아 집행한 경우 : 의뢰기관이 제출한 영장청구 의뢰서, 영장,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등 집행과정에서 작성된 서류, 처리결과 통보서 등</u> 2. <u>영장을 청구하였으나 판사가 기각한 경우 : 의뢰기관이 제출한 영장청구 의뢰서, 기각된 영장청구서, 처리결과 통보서 등</u>
<u><신 설></u>	<u>제317조(불청구 사건의 기록관리)</u> 사건사무담당직원은 <u>제308조에 따라 조제된 기록 말미에 처리결과 통보서 등을 편철한 후 별도 기록으로 관리한다.</u>
<u><신 설></u>	<u>제7장 기타사항</u>

<u><신 설></u>	<u>제318조(준용규정) ① 압수물의 수리·영치·처분 등에 관하여 이 편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성격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을 준용한다.</u>
<u><신 설></u>	<u>② 기록의 보존 등에 관하여 이 편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성격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검찰보존사무규칙」 중 진정사건 기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u><신 설></u>	<u>제13편 보칙</u> <u>제319조 (현행 제301조와 같음)</u> <u>제320조(별표와 서식 등) ① -----</u> -----.
<u>제301조 (생 략)</u> <u>제302조(별표와 서식 등) ①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대검찰청예규로 정한다.</u> 1. ~ 49. (생 략) <u><신 설></u>	1. ~ 49. (현행과 같음) <u>49의2. 제97조의2제4항의 잠정 조치청구부</u>
<u><신 설></u> 50. ~ 142. (생 략) ②·③ (생 략)	<u>49의3. 제97조의2제4항의 긴급 응급조치사후승인청구부</u> 50. ~ 14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